

교직원복리후생규정

2015.09.01. 제정
2017.08.01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에 소속된 교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소속된 전임 교원과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(이하 “교직원” 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② 전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교직원, 연구원, 조교 등의 경우는 임용 계약서에 따른다.

제3조(자녀교육지원비 및 자기계발지원비) ①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하여 별표1의 지급 기준에 따라 자녀교육지원비 및 자기계발지원비를 교직원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자녀교육지원비 및 자기계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금 신청서 <별지 제1호>
2. 1호의 신청금액에 따른 증빙서류

제4조(건강검진 지원)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현물식사 제공) ① 현물 식사를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. 단, 현물 식사는 조식과 중식에 한한다.

② 석식의 경우 오후 8시에 이후 퇴근하는 경우에 한한다.

제6조(기념품의 제공) ① 명절, 개교기념일, 기타 특정일에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하여 별표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장기근속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단체보험 가입)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 단, 1인 1건의 단체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.

제8조(동아리 지원) 교직원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통한 심신단련, 친목, 상호우애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아리 설립 및 활동을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상조회 구성) ① 교직원은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조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상조회는 자체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.

제10조(수혜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복리후생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7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당해 연도 징계를 받은 교직원

2. 당해 연도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(연구년 중인 교원 제외)

② 교직원이 부당하게 복리후생규정에서 정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, 1년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

자녀교육지원비 및 자기계발지원비 기준표

구분	지급 기준
자녀교육지원비	- 해당 교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인정받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등록비 및 학비. (단,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)
자기계발지원비	- 본인 수강료, 학비, 도서 구입비, 체력단련비, 각종 학술대회 관련 경비, 기타 자기계발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 구입비

<별표2>

장기근속 기념품 지급 기준표

근무연수	지급 기준	비고
5년	금 3돈	기념품 제작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
10년	금 5돈	
15년	금 7돈	
정년 퇴직	금 1냥	

※ 단 금액으로 지급시에는 1돈당 20만원으로 책정한다.

<별지 제1호>

지원금 신청서

자녀교육지원비

자기계발지원비

성명		소속	
직급		신청 금액	
신청 사유			

위와 같이 자녀학비지원비 및 자기계발지원비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: _____ (인)

	담당	부서장
결재		